

2026년도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 안내 공고

2026년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= 다 음 =

1. 지원목적

- 광산안전관리시설·장비 확충, 광산안전교육 및 구호훈련, 광산전문가의 광산안전 관리체계 지도·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광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 발생 시 인적·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

2. 지원대상자

-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행 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
- 전년도 6개월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
- 전년도 갱도굴진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

*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시설·장비구입비에만 한함

※ 지원 제외광산

- 2026년도 「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 공고」(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013호)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광산 광업권자
-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 사후관리 위반광산
- 생산이 중단되고, 향후 2개월 이내에 생산 계획이 없는 광산
- 보조사업 계획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광산

* 전년도 사업 승인 후 포기광산은 지원대상시설 일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3. 지원대상시설

- 가. 갱내 통신장비, 긴급 대피시설, 광산안전도 전자도면화 및 S/W
- 나. 끼임, 충돌 및 추락 방지시설
- 다. 작업환경개선 시설 및 장비
- 라. 중앙집중감시시설
- 마. 광산안전 기본장비(검정 및 구호 장비)
- 바. 낙반방지시설
- 사.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
- 아. 공동활용장비(2개 광산 이상이 공동구매, 공동활용 신청시)
- 자. 광산안전진단, 작업환경측정, 위험성평가 컨설팅
- 차. 기타시설

4. 보조율 : 사업액의 80% 이내

5. 사업기한 : 2026.12.31.까지 [장비입고/시공완료 후 보조금 신청 : 2026.11.27.까지]

6. 신청기간 : 2026.01.19.(월) ~ 2026.02.13.(금), [우편접수는 소인(消印)기준]

* 단, 작업환경측정은 반기별 접수 후 연 2회에 걸쳐 측정비용 일괄 집행 예정

7. 신청서류

○ 광산안전시설, 광산안전진단, 광산안전도 전자도면화, 위험성평가 컨설팅

필수서류	선택서류
<input type="checkbox"/> 보조사업 결정신청서(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) <input type="checkbox"/> 광업권자(대표자) 인감증명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조사업 계획서(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) <input type="checkbox"/> 견적서(시공일 경우 단가 산출내역 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(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) <input type="checkbox"/> 광물생산실적 확인원(2025년도)	<input type="checkbox"/> 시공위치(숏크리트, 통기승 등) 도면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활용 협약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활용장비 운용계획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광산안전진단 사업계획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계획서

* 전년도 광물생산실적 확인원 제출 필수

* 3개년 재무제표 제출 불필요

* 관할지역 광산안전사무소장의 검토의견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직접 광산안전사무소에 요청하여 수신 (사업신청자는 광산안전사무소에 검토의견서 발급신청 필요 없음)

○ 작업환경측정

필수서류	선택서류
<input type="checkbox"/>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측정 수수료 입금 확인 또는 지급확인서(금융기관 발행)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계산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 통장사본	(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참여시) 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디딤돌 지원 내역이 포함된 견적서

* 작업환경측정 신청방법 : 광산안전 통합서비스(www.komir.or.kr:6700/kor)에서 접수

8. 신청방법 : 한국광해광업공단(광산안전처)에 직접 또는 우편, E-mail 접수

9. 기타사항

○ 동 사업의 사후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42호(2017.03.27) 『광산 국고 보조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요령』에 따름

※ 문의처

- 광산안전시설 : 광산안전처 광산안전총괄팀(033-736-5645, ks1000@komir.or.kr)

- 작업환경측정 : 광산안전처 광산안전사업팀(033-736-5654, kangjin@komir.or.kr)

2026. 01.

우)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



한국광해광업공단